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19가합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8.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선정자와 E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77. 9. 26. 접수 제32580호로 1977.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9. 7. 5. 접수 제88750호로 위 E의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0. 8. 24. 접수 제953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등기국 2009. 11. 11. 접수 제70948호로 2009. 10.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매입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의 상속재산(이하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이 사건 상속’, 이 사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E의 지분이 모두 선정자에게 이전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선정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선정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F 소재 아파트가 선정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선정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1)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물건변동은 유효하고 선정자는 망인의 배우자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선정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 당시 상속재산은 이 사건 건물과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약 3억 3,500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합계 약 1억 2,000만원)을 공제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가치는 약 2억 1,500만원이었고, 이에 원고는 현금 및 예금채권을 상속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0, 15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속 당시 망인 명의의 G은행, H은행, I조합 계좌에 합계 1억 5,676만원의 잔액이 존재했던 점, ② 원고 스스로도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에 남겨진 돈 합계 156,769,186원 가량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예금채권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등기필증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09. 11. 5.자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상속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 선정자의 날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위 날인이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반증이 없는 점, ④ 원고의

채권자인 J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10,5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건에 대응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속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원주시 K아파트 L호와 원주시 M아파트 N호를 매수함에 있어 망인이나 선정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받았고, ② 망인 또는 선정자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의 금융기관, 과세기관 등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과다한 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상속지분인 2/7)을 명의신탁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선정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이나 선정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순현, 판사 김민수, 판사 정중원

선 정 자 명 단

1. B(선정당사자)
2. C

끝.

별지

1. 토지

서울 서초구 O 대 224.4㎡

2. 건물

서울 서초구 O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06.70㎡

2층 110.66㎡

3층 110.66㎡

4층 104.78㎡

5층 58.63㎡

옥탑 12.87㎡

지층 136.58㎡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중증,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후략)